

찜질방

(가마 찜질 시설)

안전성 외면한 곳 많다

- 화상 입기 쉽고 찜질방에서의 치료 효과 남발 -



동네마다 찜질방이 없는 곳이 없다. '가마 찜질방' '맥반석 원적외선 체험장' '불가마 찜질' 등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각종 치료 효과를 내세우며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안전 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김기범<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국>
- 정리/최재희<소비자정보국>

찜질방은 어떤 곳인가

· 맥반석, 맥섬석 등으로 만든 열원체의 열기를 쬐는 곳

우리가 흔히 찜질방이라 부르는 가마 찜질 시설은 100여평 정도 되는 넓은 방에서 뜨거운 열기를 쬐는 곳이다. 약 3년 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찜질방은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백여개가 넘는다.

업체에 따라 맥반석, 맥섬석, 옥, 흑운모 등의 열원체를 가열로에서 약 700~800°C로 가열한 뒤 꺼내어 이용자들이 그 주위에 들러서거나 누워서 열기를 쬐는 곳이다.

업체마다 부대 시설로 휴게실을 갖춰놓고 있으며 수면실, 황토방 등을 설치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특징. 한 번 이용료는 부대 시설에 따라 5천~1만원으로 다양하다.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원적외선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열기를 쬐도록 만든 열원체가 맥반석이나 옥으로 축조되었기 때-

▶찜질방은
맥반석, 맥섬석 등의
열원체 주위에
이용객들이
둘러서거나
누워서 열기를
쬐는 곳이다.



문에 이것을 쬐면 원적외선을 방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또한 바닥과 벽면 등에도 옥가루나 화토를 바르고 계르미늄 타일을 시공하여 원적외선 방출 효과를 높였다고 선전하는 업체도 있으나 찜질방에서 내세우는 원적외선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올바른 검증이 요구된다.

시설은 안전한가

· 뜨거운 열원체에 의한 화상 위험 높다

찜질방은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열원체 주위에서 열기를 쬐는 방식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원체에 신체가 접촉될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열원체는 700°C 이상의 불가마라고 하는 가열로에서 30~50분 정도 가열한 뒤 꺼내어져 그 주위에서 이용객들이 열기를 쬐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특히 열원체가 가열로에서 나올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사람들에게 떠밀리면서 열원체에 몸이 닿아 화상을 입을 우려가 크다.

열원체의 표면 온도는 가열로에서 750°C로 가열했을 경우, 꺼낸 직후의 표면 온도

가 최고 551°C였고 방사 시간이 끝나는 시점인 약 40분이 경과했을 때에도 350°C 이상을 나타낼 정도로 매우 뜨거운 고온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중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았다.

이용객들이 많이 몰리는 휴일에는 하루에 1천명 이상 이용객들이 몰리는 업체도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 떠밀리거나 부주의로 인해 손이나 팔, 얼굴 등이 열원체에 접촉돼 중화상을 입는 등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상을 입으면 신경 조직의 파괴로 감각 기능의 상실과 자생적인 피부 재생이 어렵고 치료 후에도 신체 부위의 변형이나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열원체 주위에 열전도가 잘 되지 않는 재질의 차단 시설을 설치해 열원체로부터 적정 거리를 두고 열기를 쥘 수 있도록 안전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 가열로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한 공기 오염 우려된다

열원체를 가열하는 가열로는 모든 업체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열원체를 가열한 후 꺼낼 때 유해 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실내 공기가 오염되고 실내 산소가 부족되기 쉬워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대다수 업체에서 열원체를 가열하는 동안이나 가열로에서 꺼낼 때 적정하게 환기를 시키고 있다고 했으나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업체에 따라 제대로 환기가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업체에 따라 외부 기온에 맞춰 가열 시간이나 온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온이 낮을 때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환기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열원체는 700°C 이상의 가열로에서 30~50분 정도 가열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흡입할 수 있는 강제 흡·배기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한 실내 천장 높이를 확보하는 등의 환기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적외선 효과는 믿을 만한가

·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찜질방은 모든 업체가 열원체에서 방사되는 원적외선에 의한 효능을 주된 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가열된 원석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을 찜으로써 체내의 세포를 활성화 시켜 건강 유지나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업체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원적외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물체에서 방출되고 있으며 가열 온도를 높일수록 고유의 원적외선 외에 다른 단파장의 전자파가 방사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고온으로 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찜질방에서의 원적외선 효과는 명확한 자료와 검증된 근거가 필요하다.

아울러 찜질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찜질 시설이 진료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 보조 시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업체측의 말만 믿고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참고로 원적외선은 다른 광선과 달리 생체 활성화, 탈취 작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방용품, 가전제품, 온열치료, 건강용품, 온돌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관리는 제대로 되는가

· 설치 기준 마련과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찜질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련 법규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찜질 시설 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찜질방이 이용객의 안전 확보나 위생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때 시설·설치 기준이나 운영 기준(광고 기준 포함) 등의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또한 찜질방을 이용할 때 셔츠나 바지, 가운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부병 감염 방지 등 위생 확보 측면에서도 철저한 세탁과 소독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업체에서 내세우는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광고에 대한 검증 제도를 통해 명확히 검증된 효과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 시간과 이용 횟수, 적정 방사 거리, 열원체의 적정 온도 수용 인원 등의 기준 등도 마련돼야 하며 특히 전염병 환자라면가 순환기 계통 질환자, 특수 체질 보유자들에 대한 이용시 주의 사항 등의 수칙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소

▲화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열원체 주위에 열전도가 되지 않는 안전 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적정 거리를 두고 열기를 훨 수 있도록 해야 한다.